

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소관부서 : 첨단전략산업과

제정 2020· 3· 16 조례 제158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세계적 일루전 산업을 통해 지역 발전 및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국제일루전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위원회 설치) 이천시장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)은 세계적 일루전 산업 축제의 촉진 등 기획운영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(이하 ‘조직위원회’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3조(기능)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(이하 “페스티벌”이라 한다) 종합기획의 수립
2. 페스티벌 개최에 필요한 조직운영 및 예산집행 검토
3. 페스티벌에 필요한 시설 및 제반 지원 대책 수립
4.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
5. 그 밖에 페스티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구성 등) 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문화관광·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일루전 산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④ 조직위원회는 페스티벌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조직위원회를 대표하고,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 해제될 때에는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
3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8조(회의) ① 조직위원회 회의는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조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행정·예산지원) ① 시장은 페스티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

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조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